

의안
번호

332

서울특별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행정기획위원회

서울특별시 성북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2024. 09. 04.

전문위원 김 동 성

1. 제안경위

가. 제 출 자 : 양순임의원 외 14명

나. 의안번호 : 제332호

다. 제출일자 : 2024. 08. 00.

라. 회부일자 : 2024. 08. 00.

2. 제안이유

- 이 조례는 공공건축물, 공공건물,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점자안내표지판 설치 및 점자 홍보물 비치 등을 통해 성북구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목적(안 제1조)
- 나. 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(안 제3조)
- 다. 구청장의 책무(안 제4조)
- 라. 공공건축물 등에서 점자의 사용(안 제7조)
- 마. 점자문화의 확산(안 제10조)
- 바.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(안 제11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점자법」
- 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조치
- 다. 입법예고
 - 기 간 : 2024. 08. 19. ~ 2024. 08. 23.
 - 의 견 : 의견 없음.

5. 검토의견

□ 개요

- 본 제정안은 성북구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제정안은 총 12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
□ 주요내용

- 안 제3조는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로 제공된 문서가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하고, 점자 사용의 차별금지 대상 범위를 성북구와 구 소속 기관까지로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4조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사용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, 점자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.
- 안 제5와 제6조는 「점자법」 제7조1)에 따른 점자발전기본계획 및 제8조2)에

1) 「점자법」 제7조(점자발전기본계획의 수립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점자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점자 관련 전문가 등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점자발전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점자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
2. 점자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3.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증진과 점자 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
4. 점자정책과 점자교육의 연계에 관한 사항
5. 점자의 가치 홍보 및 점자문화유산의 보전에 관한 사항
6. 점자의 보급 및 국제 교류에 관한 사항
7. 점자정보화에 관한 사항
8. 남북한 점자 통일 방안에 관한 사항
9. 점자 관련 전문인력의 자격 부여 및 양성에 관한 사항
10. 그 밖에 점자의 발전과 보전에 필요한 사항

2) 「점자법」 제8조(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등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중 관련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

다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적합한 ‘성북구 점자문화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,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계획수립 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,

- 안 제7조는 성북구가 소유·관리하는 공공건물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하도록 함.
- 안 제8조는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제15조3)에서 정하는 행사 외에 성북구 주관 행사 시 점자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,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에서도 점자 자료가 제공될 수 있게 권장하도록 함 .

또한, 재난 상황 발생 시 시각장애인이 알 수 있도록 점자 안내 책자도 제작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-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공문서의 점자문서 규정 준수, 점자문화의 확산, 민간단체의 활동 지원, 한글 점자의 날을 위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음.

□ 종합의견

- 이상과 같이 본 제정안은 점자문화 진흥을 위해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실태조사 및 세부계획 수립을 통한 점자의 보급 및 지원, 점자문화의 확산, 민간단체 활동 지원 등을 규정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 신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써, 점자는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

3)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제15조(한국수어 통역 또는 점자자료 등의 제공) ① 법 제22조제3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경일 또는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로 한다.

1. 「국경일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경일
2. 「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기념일

② 법 제22조제3항에서 “음성변환용 코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표시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자적 표시를 말한다.

1. 음성변환용 코드
2. 청각, 촉각 등의 감각을 통하여 습득할 수 있도록 인쇄물 정보를 변환시켜주는 전자적 표시

등에 관한 법률」에서 장애인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수단으로 명시돼 있음.

- 또한 「점자법」에 따르면 공공기관 등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해 모든 정보에 접근·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음.
- 따라서, 본 제정안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보급과 확산, 촉진을 위해 필요한 조례이며, 검토 결과 상위법에 저촉 여부 등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 됨.